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민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8
----------	-----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25일
발 의 자 : 양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 전병주, 신정호, 임만균,
임종국, 여 명, 김소양,
김재형, 김제리, 한기영,
김태호, 오현정, 이정인(12명)

1. 폐지이유

-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그동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